

# 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2-121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티에스텍(주)
임직원	대표이사 2인, 담당임원
외부감사인	OO회계법인,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

## 2. 조치내용

- 티에스텍(주)
  - 과징금 60.6백만원
  - 감사인지정 2년
  -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
- 대표이사 000
  - 과징금 6백만원
- 대표이사 000
  - 과징금 6백만원
- 담당임원 000
  - 과징금 6백만원
- OO회계법인
 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  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OO회계법인
  - 과징금 7.2백만원
 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  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공인회계사 000
  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  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  - 직무연수 8시간

### 3. 조치이유

#### 가. 지적사항

< 티에스텍(주) >

##### ○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

-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(완전자본잠식)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

##### ○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

-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

< OO회계법인,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>

##### ○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(완전자본잠식)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

##### ○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

## 나. 근거법규

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6조 등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29조 등
-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, 제27조 등